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10월 8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5년 10월 12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10월 20일

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 수 영

나.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나아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운영 내용 개정 및 신설(안 제4조~제4조의3)
- 상위 법령 조항 개정 사항 반영(안 제17조, 안 제22조)
-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 규정 신설 (안 제32조)
- 사용료·대부료 감액조정 대상 범위 확대(안 제34조)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6조, 제21조,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16조, 제34조
- 「관광진흥법」 제76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백 인 업

○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나아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4조에서 제4조의3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 안 제32조제3항에서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34조에서 당해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률을 100분의 70을 적용하는 것을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률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감액조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음.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신설 및 관광지 등의 사업 시행자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율 규정의 신설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